

교정복지의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의 비판적 고찰

안 봉 근(청주대학교)

1. 연구목적 및 방법

사형은 단순히 하나의 경과적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를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으로써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에 반할 뿐 아니라 인간존엄성 실현과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복지국가의 이상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연구자는 교정복지의 가치와 철학을 중심으로 사형에 관한 다각도의 비판적 고찰을 함으로써 그 문제성을 지적하고 나아가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우선, 사형은 생명권이라는 불가침적인 기본권과 시공을 초월한 인간의 생존본성을 부정할 때만 가능한 것이며, '인간행동의 근거'를 문화와 사회라는 사회체계 속에서 찾으려는 거시적 관점을 부인할 수 없는 한, 사형제도는 사회적 연대의식과 같은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전체가 책임을 진다는 복지철학에 어긋나며, 범죄인에 대한 교정과 재활 등 클라이언트의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교정복지와는 서로 양립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체제논리로 보더라도, 국가 권력의 기원은 주권이 있으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이념적 인식을 거부할 수 없는 한(헌법 제1조 1항) 사형제도는 복지체계를 갖는 사회에서 더 이상 그 정당성의 근거를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자유와 권리는 인간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존재 그 자체를 거부한 후에는 행·불행을 말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형제도 합의와 같이 스스로의 생존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는 주권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주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초월적 인식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오늘날 인간존엄성 실현을 궁극의 목표로 하는 교정복지의 관점에서 존속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형제도는 필요악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하력을 주어 범죄 발생을 억제한다는 사형존치론의 이유 및 현재의 합헌논거에 대하여도 통계학적 조사결과를 통해(예컨대, shin, 1978)반박되는 바, 사형폐지국가가 존치국가가 보다 또 사형존치시 보다 폐지이후에 살인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사형이라는

규범의 제시를 통해 범행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역사적 실증이 있을 뿐이며, 오늘날에도 완전범죄를 노리고 본의는 아니지만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아무튼,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같은 구조적 모순을 안고있는 사회에서 삶의 조건을 개선함이 없이 형벌의 가혹한 제재만으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발상이며, 원인적 문제해결 모색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복합적인 범죄원인을 고려할 때, 사형은 국가가 사회·환경적 조건을 도외시한 채 개인 윤리적 시각에서 오로지 범죄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체계상 모순된 응보논리이며, 사회정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범죄인을 수단화하여 일반인의 범죄예방을 도모하겠다는 사형론자의 주장은 사형이 갖는 그 위하적 효과의 여부에 불구하고 비인도적인 것이며, ‘인간의 기본적 자유는 사회의 총체적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불가침성을 지닌다’라는 롤즈(Rawls)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3. 결론 및 복지적 함의

오늘날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회적인 데에 있다고해도 좋을만큼 그 원인의 근저에는 사회의 모순이 된다. 그에 따라 사회복지 실천은 ‘환경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을 지향하며 인간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인간과 사회 양면의 변화를 통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는 사회의 병폐를 일깨워줄 뿐이라는 통합적 시각에서, 인간에 대한 편견과 교정복지와의 이율배반 속에 존속하는 사형제도를 조속히 폐지함으로써 국가가 먼저 생명존중 사상의 실천적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연대를 고양하고 인간존엄의 자기실현에 다가서는 길은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므로, 범죄인의 인권수호와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이끌어야 할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투입에 관한 과제가 한층 광범위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된다.